



# 시 보



제1632호 2024. 2. 5.(월)

## 조 례

-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

## 규 칙

-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9

## 공 고

- 목포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3
- 2024년~2026년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36
-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7
-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64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2월 5일

##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760 호

###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와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④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대표자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

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⑥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르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동 행정복지센터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의회 또는 시청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정기간)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의장은 구두·전화 등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면서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제11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4.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지원 등 사무
5. 제2조제3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등록 및 공개 사무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 진행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리·각하 결정기한이 지난 청구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주민조례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input type="checkbox"/>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input type="checkbox"/>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 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명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	---

청구이유	
------	--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	<input type="checkbox"/> 이용신청  <input type="checkbox"/> 이용신청 안함
--	---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 대표자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input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목포시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수수료 없음
------	------------------------------	-----------

#### 유의사항

-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 공동대표자용 [ ]청구 · [ ]철회 · [ ]선정대표자 지정 서식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 청구인의 대표자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 ]청구, [ ]철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의회 의장 귀하

#### 작성방법

- “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 “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별지 제3호 서식]

##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목포시의회 의장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별지 제5호 서식]

### 청구인명부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서명을 요청한 사람	[ ]대표자 (성명 ) [ ]수입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입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수입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별지 제6호 서식]

#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목포시의회 의장 귀하

### 유의사항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별지 제7호 서식]

###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목포시의회 의장</b>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 10px;">직인</span></p>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별지 제8호 서식]

#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이의대상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	--

신청 취지	
-------	--

신청 사유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의회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 서식]

#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

변경 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 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사유	
------	--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

년 월 일

변경 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목포시의회 의장 귀하

### 유의사항

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별지 제10호 서식]

#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	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목포시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	수수료 없음
------	------------------------------	-----------

### 유의사항

-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2월 5일

## 목 포 시 장 박 홍 른

목포시 규칙 제 1866 호

###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행정적 지원 및 1,000만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정적”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3조 중 “전문가 또는 단체, 기관”을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준수하여”를 “지켜”로 한다.

[별표 3]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에 따른 변경된 센터장 및 센터 직원 보수 등 지급기준은 직원 신규채용 및 연장계약부터 적용한다.

[별표 3]

**센터장 및 센터 직원 보수 등 지급기준(제6조관련)**

지급항목 \ 직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
월기본급	지방공무원 5급 10호봉 봉급 상당액	지방공무원 6급 10호봉 봉급 상당액	지방공무원 7급 10호봉 봉급 상당액	지방공무원 8급 7호봉 봉급 상당액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구성) ① (생략)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구성) (현행 제1항과 같음)
제3조(센터직원 채용) ① (생략) ② 센터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실적평가 후 <u>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u> ③ 센터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u>구비서류</u>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④ (생략)	제3조(센터직원 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한 차례만</u> ----- -----. ③ ----- <u>첨</u> <u>부서류</u> -----. 1. ~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6조(보수) ①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은 별표3과 같으며, 수당은 「지방재정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을 <u>준용한다.</u>	제6조(보수) ----- ----- ----- ----- ----- <u>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u> <u>에서 지급할 수 있다.</u>
제8조(주민공모사업) 주민공모사업(이하 “공모사업”이라 한다)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참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u>각호</u>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u>행정적 지원 및 1,000만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정적</u>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주민공모사업) ----- ----- ----- ----- <u>각 호</u> ----- ----- -- <u>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u> <u>적</u> ----- -----.

1. ~ 5. (생략)

제9조(주민제안사업) 주민제안사업(이하 “제안사업”이라 한다)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성화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13조(전문가 등 지원) 시장은 공모 및 제안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또는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 집행) ① (생략)

② 주민은 관계법령과 보조금 지원 결정내용 및 조건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주민제안사업) -----  
-----  
-----  
----- 각 호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전문가 등 지원) -----  
-----  
-----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  
-----  
-----  
-----  
-----.

제14조(사업비 집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켜 -----  
-----  
-----  
-----.

③ (현행과 같음)

# 「목포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 법 예 고

「목포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5.

## 목 포 시 장

### 1. 제정 이유

- 자치법규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개선·정비하기 위해 시행중인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하여 자율적 부패영향평가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2. 주요 내용

- 규칙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부패영향 평가대상 및 제외법규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 부패영향 기준 및 평가의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 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 평가기한 (안 제7조~제8조)
-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재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2조)

### 3. 제정 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기획예산과)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7. 예산사항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 2024. 2. 5. ~ 2. 26. (21일)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10. 의견제출

-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26일까지 목포시장(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감사실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75), 직접방문 등

###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감사실(☎061-270-3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규칙 제 호

## 목포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조례, 규칙 등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검토하여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정비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주관부서”란 조례, 규칙, 훈령 등(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평가담당부서”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현행 자치법규 등

**제4조(평가대상 제외법규 등)** 제·개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법규(이하 “제외법규”라 한다)에 해당되더라도 필요시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직권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수당·문서·관인·차량 관리 등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법규 등
2. 폐지법규, 알기 쉬운 법령 등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법규
3. 그 밖에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규

**제5조(평가기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제6조(평가의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전까지 제·개정 입법안, 별지 제1호서식(이하 “기초자료 등”)을 작성하여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자치법규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의뢰를 접수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 등 작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주관부서가 제출한 제·개정 입법안 및 기초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를 작성한다.

**제8조(평가기한)**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시작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안일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주관부서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입법예고 시작 전까지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관련부서와의 협의 등)** ① 평가담당부서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 부서간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10조(평가결과 통보)**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를 완료하는 즉시 주관부서(관련부서가 있는 경우 관련부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첨부한다.

**제11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평

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 1. 주관부서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 3. 주관부서와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12조(평가결과 반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결과 개선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목포시 조례·규칙 심의 의뢰 전까지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 등의 사유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담당부서 장에게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부패영향평가 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자치법규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자치법규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 자치법규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자치법규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자치법규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과 자치법규 등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시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시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 통제	이해충돌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자치법규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자치법규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자치법규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별표2]

##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제5조 관련)

평가영역	주요 검토 내용	평가결과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자치법규 등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입니까?	① 과도함 ② 과도하지 않음 ③ 해당 없음
	(제재규정의 적정성) 자치법규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입니까?	① 적정 ② 부적정(약함/강함) ③ 해당 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자치법규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 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자치법규 등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구체적·객관적 (통제장치 포함) ② 추상적·주관적 ③ 해당 없음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시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대표성 확보) ② 없음(대표성 부족) ③ 해당 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시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③ 해당 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해당 자치법규 등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자치법규 등의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 없음

[별지 제1호서식]

※ 관리번호		<b>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b>			
자치법규 명					
형 식	<input type="checkbox"/> 조 례	<input type="checkbox"/> 규 칙	<input type="checkbox"/> 훈령·예규		
구 분	<input type="checkbox"/> 제 정	<input type="checkbox"/> 개 정	<input type="checkbox"/> 현 행		
관련 법규 명		(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지방자치단체	입안주무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 (예정)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대상기관 (부서)			
		협의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의견수렴절차	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별도 붙임자료	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 「관리번호」란은 평가담당부서에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평가담당	(소속)	(직급)	(성명)
입안주무부서		통보(조치)일	20 . . .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li> <li>(예2) 평가담당부서에서 입안주무 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요구</li> </ul>	

[별지 제3호서식]

# 세 부 평 가 서

▶ 자치법규명 :

▶ 평가대상 조문

▶ 평가기준

▶ 현 황

▶ 문제점

▶ 검토결과

[별지 제4호서식]

**부패영향평가 조치결과서**

자치법규 명			
입안주무부서		조치일	20 . . .
관련조문	조치요구 사항	조치결과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칙명 : 목포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 성명(단체명) : \_\_\_\_\_ (서명 또는 인)

○ 주 소 : \_\_\_\_\_

○ 전 화 번 호 : \_\_\_\_\_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24 - 240호

- 2024년~2026년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

#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른 2024년 ~ 2026년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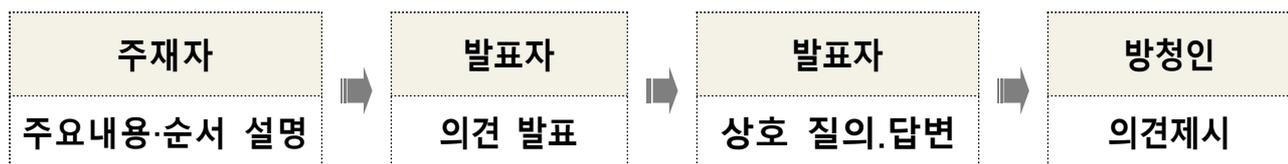
## 목 포 시 장

### 1. 개최목적

- 2024년 ~ 2026년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하기 위한 주민 의견수렴

### 2.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4. 2. 16.(금) 10시
- 장 소 : 목포국제축구센터 2층 대강당(목포시 내화마을길 89)
- 주 재 자 :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 발 표 자 : 발표자 선정 절차에 의함
- 진 행



###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목포시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잠정 결정한 2024년 ~ 2026년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기준 금액에 대한 의견 청취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

- ◇ 주민의견수렴 방식 결정 : 주민공청회
-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잠정 결정 : (현재) 월 110만원 ⇨ (변경) 월 150만원
  - ▶ 월 150만원 =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120만원 + 보조활동비 월 30만원

※ 공청회 후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3차 회의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금액을 최종 결정함.

###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 발표자 : 발표를 신청한 사람,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리장 및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
- 신청자격 : 제출일 기준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사람
  - ※ 목포시 소속 공무원 및 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제외
  - ※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따라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정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 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 5. 발표자 신청 및 선정

- 발표인원 : 4명 내외
  - ※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의견제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의견 발표자 수는 동일하게 선정
  - ※ 신청 추천이 저조할 경우 발표자 수가 다르게 선정될 수 있음
- 발표방법 : 발표자별 5분 이내 발표
- 발표내용 :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결정한 의정활동비 금액 월 150만원에 대한 찬·반 의견 발표
- 신청기간 : 2024. 2. 6.(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신청서(붙임1) 제출
  - ▷ 방문 또는 우편 : 목포시 양을로 203(목포시청 3층, 기획예산과 주무관 임성훈)
  - ▷ 전자우편(e-mail) : [imsungh@korea.kr](mailto:imsungh@korea.kr)
- 선정 및 알림 : 2024. 2. 8.(목)까지 (유선 통보)

### 6. 정보통신망 등 의견제출

- 제출자격 : 제출일 기준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이상인 자
- 제출내용 :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결정한 의정활동비 기준금액 월 150만원에 대한 의견
- 제출기한 : 2024. 2. 8.(목)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의견제출서(붙임2) 제출
  - ▷ 방문 또는 우편 : 목포시 양을로 203(목포시청 3층, 기획예산과 주무관 임성훈)
  - ▷ 전자우편(e-mail) : imsungh@korea.kr

### 7. 기타사항

- 공청회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방청을 희망하시는 주민은 2024. 2. 16.(금) 10시까지 목포국제축구센터 2층 대강당으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목포시 기획예산과 주무관 임성훈(☎ 061-270-8608)

- 붙임 1. 발표신청서(서식)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3.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 1부. 끝.

**붙임 1** 발표신청서

발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도로명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휴대전화)		직 업	

**2024 ~ 2026년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의견**

※ 간략하게 의견 작성

- ▶
- ▶
- ▶
- ▶
- ▶

※ 실제 발표할 원고는 발표자 선정 후 작성 요청 예정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등**
- 수집·이용 목적 : 의정활동비 관련 공청회 발표 자격 확인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발표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입된 개인정보는 본 공청회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공청회 종료 후 폐기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 출 처
  - ▷ 방문 또는 우편 : 목포시 양을로 203(목포시청, 3층 기획예산과)
  - ▷ 전자우편(e-mail) : imsungh@korea.kr
- 제출기한 : 2024. 2. 6.(화)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붙임 2**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도로명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휴대전화)			

**2024 ~ 2026년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의견**

2023.12.14.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상한이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 이내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작성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 1.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등**
- 2. 수집·이용 목적 : 의정활동비 관련 공청회 의견제출 자격 확인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의견으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제출처
  - ▷ 방문 또는 우편 : 목포시 양을로 203(목포시청, 3층 기획예산과)
  - ▷ 전자우편(e-mail) : [imsungh@korea.kr](mailto:imsungh@korea.kr)
- 제출기한 : 2024. 2. 8.(목)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붙임 3**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

**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개요**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40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의정비심의회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의정비심의회회의 운영 등)

**□ 개념 및 연혁**

- 의정비 : 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성격의 금액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의정비심의회위원회에서 자치단체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액 결정

《 의정비 : 의정활동비+월정수당 》

- ① 의정활동비 : 의정 자료수집·연구,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 보전으로 정액지급
- ② 월정수당 :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

○ 의정활동비 개정 연혁

시행일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1995. 7. 1.	월 350,000원 이내	-
2000. 1. 1.	월 550,000원 이내	-
2004. 1. 1.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b>2023. 12. 14.</b>	<b>월 1,200,000원 이내</b>	<b>월 300,000원 이내</b>

「지방자치법 시행령」 의정활동비 개정 취지

- 2003년 이후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위해 물가상승률(56.2%)의 50%를 반영하여,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 이내로 인상
-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의정활동비 개정 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개정
  - 의정활동비 인상(월 40만원 인상) : 월 110만원 이내 ⇨ 월 150만원 이내

[별표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현행>			<개정>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 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도 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 의회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 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② 2023년 전라남도 시군 의정비 현황

(단위 : 만 원(연간금액) / 의원1인당)

지자체명	2022년도			2023년도					비고 (순위)
	지금액			지금액			전년대비 인상률(%)		
	월정 수당	의정 활동비	소계 (A)	월정 수당	의정 활동비	소계 (B)	금액 (B-A)	인상률 (%)	
목포시	2,373	1,320	3,693	2,406	1,320	3,726	33	0.9%	
여수시	2,434	1,320	3,754	2,701	1,320	4,021	267	7.1%	
순천시	2,540	1,320	3,860	2,733	1,320	4,053	193	5.0%	
나주시	2,645	1,320	3,965	2,682	1,320	4,002	37	0.9%	
광양시	2,718	1,320	4,038	2,719	1,320	4,039	1	0.0%	
담양군	2,153	1,320	3,473	2,183	1,320	3,503	30	0.9%	
곡성군	1,874	1,320	3,194	2,052	1,320	3,372	178	5.6%	
구례군	2,037	1,307	3,344	2,047	1,320	3,367	23	0.7%	
고흥군	1,974	1,320	3,294	2,002	1,320	3,322	28	0.9%	
보성군	2,171	1,320	3,491	2,201	1,320	3,521	30	0.9%	
화순군	2,222	1,320	3,542	2,376	1,320	3,696	154	4.3%	
장흥군	2,172	1,320	3,492	2,203	1,320	3,523	31	0.9%	
강진군	2,082	1,320	3,402	2,111	1,320	3,431	29	0.9%	
해남군	2,019	1,320	3,339	2,042	1,320	3,362	23	0.7%	
영암군	2,317	1,320	3,637	2,349	1,320	3,669	32	0.9%	
무안군	2,066	1,320	3,386	2,096	1,320	3,416	30	0.9%	
함평군	1,995	1,320	3,315	2,024	1,320	3,344	29	0.9%	
영광군	2,449	1,320	3,769	2,450	1,320	3,770	1	0.0%	
장성군	2,298	1,320	3,618	2,331	1,320	3,651	33	0.9%	
완도군	2,311	1,320	3,631	2,344	1,320	3,664	33	0.9%	
진도군	2,061	1,320	3,381	2,090	1,320	3,410	29	0.9%	
신안군	2,163	1,320	3,483	2,194	1,320	3,514	31	0.9%	

※ 2023년 목포시 의정비 연 3,726만원(목포시 6위/전라남도 평균 3,608만원)

※ 의정활동비는 2023년 기준 전국 시군구 동일 지급

3 전국 유사자치단체 의정비 현황

(단위 : 만 원(연간금액) / 의원 1인당)

연번	지자체명	2023년도 지급액			비고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소계	
1	경기 구리시	2,887	1,320	4,207	
2	경기 안성시	2,950	1,320	4,270	
3	경기 포천시	2,749	1,320	4,069	
4	경기 여주시	2,590	1,320	3,910	
5	경기 동두천시	2,567	1,320	3,887	
6	강원 춘천시	3,084	1,320	4,404	
7	강원 강릉시	2,777	1,320	4,113	
8	충북 충주시	2,885	1,320	4,205	
9	충남 서산시	2,523	1,320	3,843	
10	충남 당진시	2,658	1,320	3,978	
11	전북 군산시	2,685	1,320	4,005	
12	전북 익산시	2,649	1,320	3,969	
13	전남 목포시	2,406	1,320	3,726	
14	전남 순천시	2,733	1,320	4,053	
15	전남 나주시	2,682	1,320	4,002	
16	전남 광양시	2,719	1,320	4,039	
17	경북 경주시	2,306	1,320	3,626	
18	경북 안동시	2,304	1,320	3,624	
19	경남 거제시	2,751	1,320	4,071	
유사자치단체 평균		2,679	1,320	4,000	

※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현황 참고

#### 4 전남 시군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백만 원, %)

자치단체	2018년			2023년			비고
	자체수입 (A)	자치단체 예산규모 (B)	재정자립도 (A/Bx100)	자체수입 (A)	자치단체 예산규모 (B)	재정자립도 (A/Bx100)	
목포시	119,149	576,347	20.67	160,656	859,073	18.7	
여수시	289,085	927,173	31.18	375,649	1,397,916	26.87	
순천시	196,295	928,837	21.13	237,282	1,204,824	19.69	
나주시	114,640	556,333	20.61	141,403	927,620	15.24	
광양시	168,302	634,349	26.53	222,387	984,556	22.59	
담양군	40,371	336,007	12.02	56,223	508,148	11.06	
곡성군	23,117	323,745	7.14	38,945	449,343	8.67	
구례군	16,722	263,600	6.34	26,277	340,255	7.72	
고흥군	31,840	527,000	6.04	56,550	836,013	6.76	
보성군	23,049	396,776	5.81	45,110	555,872	8.12	
화순군	77,526	431,114	17.98	92,168	641,291	14.37	
장흥군	23,321	317,512	7.34	37,285	497,681	7.49	
강진군	22,583	324,064	6.97	35,081	460,727	7.61	
해남군	38,894	489,747	7.94	64,707	836,864	7.73	
영암군	49,391	353,068	13.99	64,732	582,224	11.12	
무안군	55,590	418,758	13.28	76,520	580,919	13.17	
함평군	21,018	305,537	6.88	37,996	501,076	7.58	
영광군	47,844	364,743	13.12	69,290	591,299	11.72	
장성군	33,385	374,775	8.91	56,932	518,311	10.98	
완도군	25,704	359,471	7.15	38,491	623,709	6.17	
진도군	22,335	300,080	7.44	35,244	451,050	7.81	
신안군	25,368	424,355	5.98	44,928	647,259	6.94	

5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중간 생략)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중간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목포시 공고 제2024 - 248호

##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

### 목 포 시 장

#### 1. 조 례 명 :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보완

#### 3. 주요내용

#####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12건)

-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공고 방법 개정(안 제7조)
  -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공고 시 해당 자치단체의 공보(전남도보 또는 목포시보)나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규정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안 제13조의4)
  - 종전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총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의 용도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및 도시계획시설부지 내에서 건축하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대상 명확화(안 제15조)
  -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용어를 조례에 반영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의 확대(안 제23조의2)**

- 종전에는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00분의 10이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 완화 요건 개선(안 제51조)**

- 종전에는 임대 의무기간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120% 이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였으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도모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과 관계없이 120% 이내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

○ **방재지구 내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안 제51조제4항)**

- 종전에는 방재지구의 지정을 활성화하고 재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40% 이내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

○ **국토계획법 및 타법 조·항·호·목, 별표 번호, 정부조직 등 변경사항 반영**

- 국토계획법 시행령 조문 제목 및 각호 변경(안 제43조)
- 국토계획법 시행령 조항 변경(안 제48조의3)
- 대기환경보전법 별표 번호 변경(안 제55조, 별표 5, 별표 17)
- 주택법 시행령 조·항·호 변경(안 별표 5)
- 정부조직법에 따른 직제 변경(안 별표 18)

□ **현행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1건)**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 [그림 예시] 신설(안 별표 21)

- 조례 제15조의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에 대한 용어 해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 예시] 추가·신설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7.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기획예산과) : 의견없음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안 제7조, 제15조, 제23조의2, 제43조, 제48조의3, 제51조, 제55조, 별표 5, 별표 17, 별표 18
  - 상위법령 위임사항 반영 : 안 제13조의4, 별표 21

**8. 예산 상황 :** 별도 예산조치 불필요

**9. 입법예고 기간 :** 2024. 2. 5. ~ 25.(20일간)

**10.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11.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12.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2. 25.까지 목포시장(도시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9), 직접방문 등

※ 보내실 곳 : 우)58613,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도시디자인과)

**1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전화 : 061-270-8414, FAX : 061-270-35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시를”을 “전남도보 또는 목포시보나 시를”로, “일간신문과”를 “일간신문에 게재하고,”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4(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횡수별 3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 횡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3.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제15조제2호다목 괄호 중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나목 중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을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0호 중 “100분의 5이하”를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

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이하”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을 “(중요시설물보호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 76조제1항”을 “영 제76조제2호”로 한다.

제48조의3 전단 중 “영 제84조의2제2항”을 “영 제84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51조제3항 본문 중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 의무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120퍼센트 이하”를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51조제4항 중 “120퍼센트”를 “140퍼센트”로 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한다.

[별표 5] 본문 괄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로, “제1호의2”를 “제3호”로 한다.

하목(2) 중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한다.

[별표 17] 차목(2) 중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한다.

[별표 18] 사목(3)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  
(제15조의2 관련)

- 1. 절토하려는 농지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보다 현저하게 높아서 경작이 어려운 경우

그럼 예시 1. 주변을 둘러싼 토지가 낮고 절토하려는 농지만 높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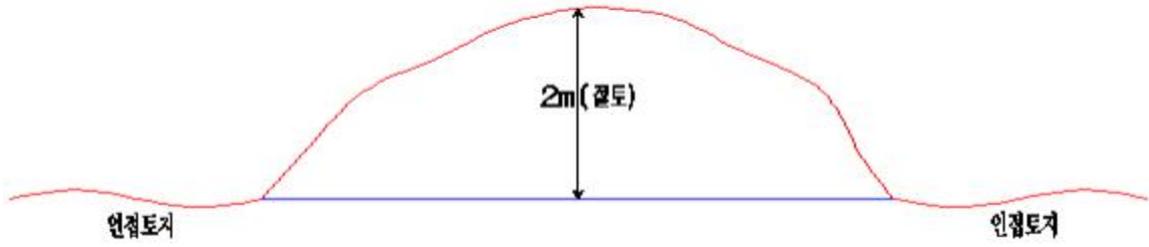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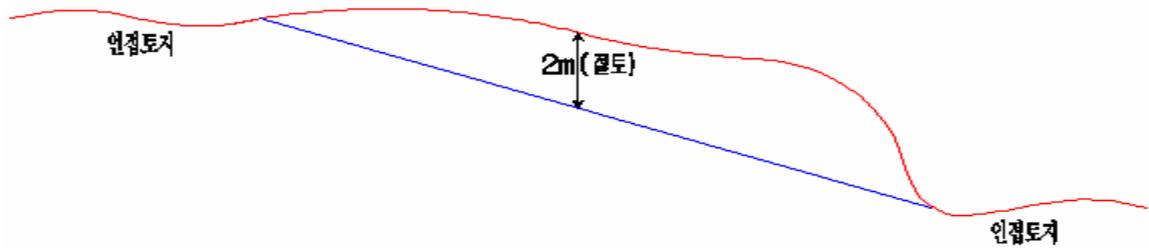


그림 예시 2. 주변을 둘러싼 토지가 일부는 높고 일부는 낮은 경우



2. 성토하려는 농지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경작이 어려운 경우

그림 예시 1. 주변을 둘러싼 토지가 높고 성토하려는 농지만 낮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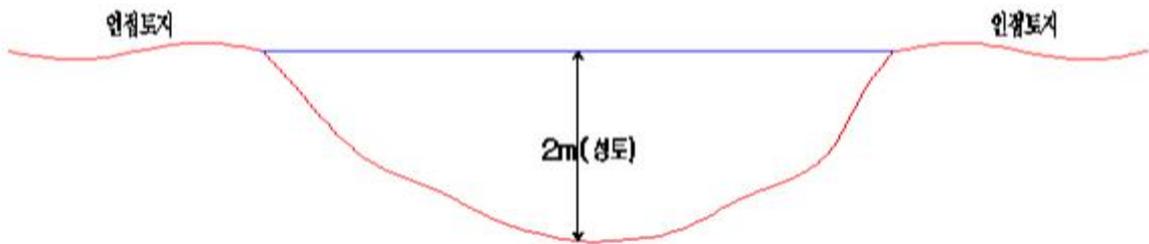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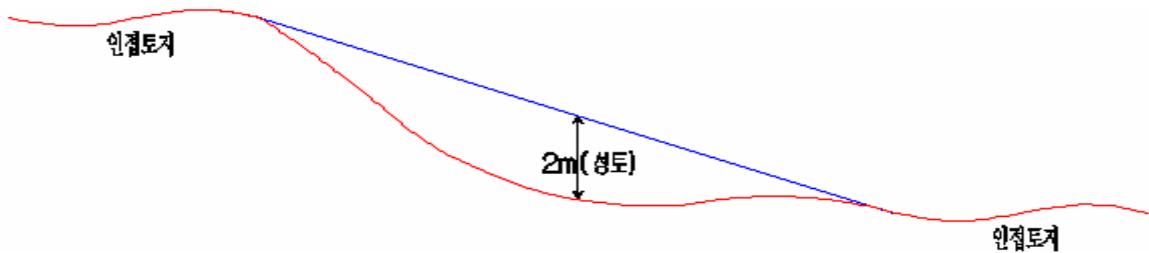


그림 예시 2. 주변을 둘러싼 토지가 일부는 높고 일부는 낮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4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의 수리가 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방재지구 내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3. 제1호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신·구조문 대비표(본문)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u>시를</u>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u>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u>는 물론 시청과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을 통하여 14일 이상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u>공고하여야</u>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 ----- ----- <u>전남도보</u> 또는 <u>목포시보나 시를</u> ----- ----- <u>일간신문에 게재하고,</u> ----- ----- ----- ----- <u>공고해야</u>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의4(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p> <p><u>&lt;단서신설&gt;</u></p> <p>1. <u>&lt;신 설&gt;</u></p> <p>2. <u>&lt;신 설&gt;</u></p>	<p>제13조의4(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 ----- ----- ----- ----- ----- <u>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p>1. <u>국가 또는 시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횡수별 3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u></p> <p>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p>

<p>3. &lt;신 설&gt;</p>	<p><u>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 횡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u></p> <p>3.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u>시장의 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u></p>
<p>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생 략)</p> <p>1. (생 략)</p> <p>2. (생 략)</p> <p>가. ~ 나. (생 략)</p> <p>다. <u>녹지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u></p> <p>3. ~ 4. (생 략)</p> <p>5. (생 략)</p> <p>가. (생 략)</p> <p>나. 토지의 일부를 <u>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u></p> <p>다. ~ 마. (생 략)</p> <p>6. (생 략)</p>	<p>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p> <p>3. ~ 4.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u>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u> -----</p> <p>다. ~ 마. (현행과 같음)</p> <p>6. (현행과 같음)</p>

제23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 (생략)

- 1. ~ 9. (생략)
-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생략)

제23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 (현행과 같음)

- 1. ~ 9. (현행과 같음)
- 10. -----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이하-----

11. (현행과 같음)

제43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7. (생략)

제43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

-----  
 -----  
 -----  
 -----  
 -----  
 -----

1. ~ 17. (현행과 같음)

제48조의3(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 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제48조의3(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 제3항-----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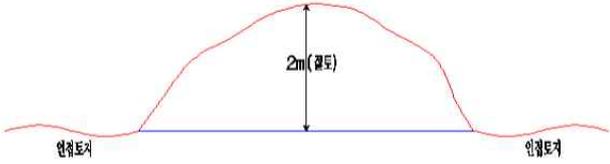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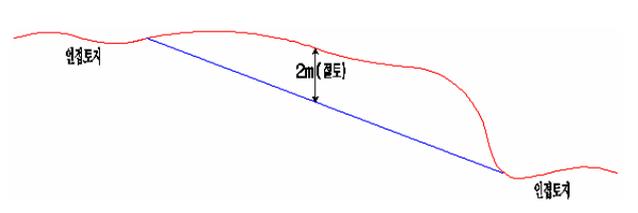
<p>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 2. (생략)</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u>120퍼센트</u> 이하로 한다.</p> <p>⑤ ~ ⑦ (생략)</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p> <p>-----</p> <p>----- <u>140퍼센트</u> -----</p> <p>-----</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p><b>제55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b></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u>별표 1</u>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p> <p>3. ~ 4. (생략)</p>	<p><b>제55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 <u>별표 1의3</u> -----</p> <p>-----</p> <p>3. ~ 4.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 대비표(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5]  <u>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u>                      (제27조제3호 관련)</p> <p>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p> <p>가. ~ 파. (생략)</p> <p>하. (생략)</p> <p>(1) (생략)</p> <p>(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p>	<p>[별표 5]  <u>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u>                      (제27조제3호 관련)</p> <p>-----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2호-----                      ----- 제3호-----                      -----                      -----</p> <p>가. ~ 파. (현행과 같음)</p> <p>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p>

<p>같은 법 시행령 <u>별표 1</u>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p> <p>(3) ~ (6) (생략)</p> <p>거. ~ 저. (생략)</p>	<p>----- <u>별표 1의3</u>----- ----- -----</p> <p>(3) ~ (6) (현행과 같음)</p> <p>거. ~ 저. (현행과 같음)</p>
<p>[별표 17]</p> <p><u>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u></p> <p>(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제27조제15호 관련)</p> <p>가. ~ 자. (생략)</p> <p>차. (생략)</p> <p>(1) (생략)</p> <p>(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 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u>별표 1</u>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p> <p>(3) ~ (5) (생략)</p> <p>카. ~ 머. (생략)</p>	<p>[별표 17]</p> <p><u>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u></p> <p>(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제27조제15호 관련)</p> <p>가. ~ 자. (현행과 같음)</p> <p>차.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u>별표 1의3</u>----- -----</p> <p>(3) ~ (5) (현행과 같음)</p> <p>카. ~ 머. (현행과 같음)</p>
<p>[별표 18]</p> <p><u>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u></p> <p>(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p>	<p>[별표 18]</p> <p><u>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u></p> <p>(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p>

<p>(제27조제16호 관련)</p> <p>가. ~ 바. (생략)</p> <p>사. (생략)</p> <p>(1) ~ (2) (생략)</p> <p>(3) <u>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u></p> <p>아. ~ 피. (생략)</p>	<p>(제27조제16호 관련)</p> <p>가. ~ 바. (현행과 같음)</p> <p>사.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 ----- -----</p> <p>아. ~ 피. (현행과 같음)</p>
<p>&lt;신설&gt;</p>	<p>[별표 21]</p> <p><u>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u> (제15조의2 관련)</p> <p>1. <u>절토하려는 농지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보다 현저하게 높아서 경작이 어려운 경우</u></p> <p><u>그림 예시 1. 주변을 둘러싼 토지가 낮고 절토하려는 농지만 높은 경우</u></p>  <p><u>그림 예시 2. 주변을 둘러싼 토지가 일부는 높고 일부는 낮은 경우</u></p>



2. 성토하려는 농지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경작이 어려운 경우

그림 예시 1. 주변을 둘러싼 토지가 높고 성토하려는 농지만 낮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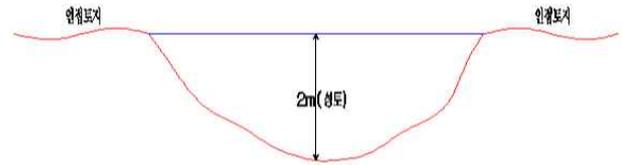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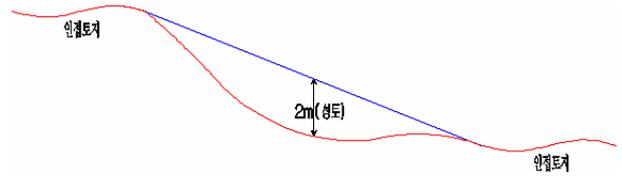


그림 예시 2. 주변을 둘러싼 토지가 일부는 높고 일부는 낮은 경우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24 - 263호

#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5.

## 목 포 시 장

### 1. 개정 이유

- 복잡·다양해지는 정책수요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각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 및 운영하여 시정과제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문과 대내외 소통 강화

### 2. 주요 내용

- 특별보좌관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특별보좌관의 위촉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 투자유치, 경제, 문화예술, 관광, 체육, 여성, 복지, 기후환경, 농업, 해양수산, 대외 협력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특별보좌관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특별보좌관의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감사실)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대상 여부(기획예산과)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7. 예산사항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 2024. 2. 5. ~ 2. 26. (21일)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10.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26일까지 목포시장(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기획예산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78), 직접방문 등

###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기획예산과(☎061-270-8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특별보좌관) ① 시장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특별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1.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 2. 투자유치, 경제, 문화예술, 관광, 체육, 여성, 복지, 기후환경, 농업, 해양수산, 대외 협력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특별보좌관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13조(중전의 제12조)제1항 중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을 “위원과 특별보좌관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7조(특별보좌관) ① 시장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u></p> <p><u>② 특별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u></p> <p><u>1.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u></p> <p><u>2. 투자유치, 경제, 문화예술, 관광, 체육, 여성, 복지, 기후환경, 농업, 해양수산, 대외 협력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u>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u></p> <p><u>③ 특별보좌관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u></p>
<p><u>제7조 ~ 제11조 (생략)</u></p>	<p><u>제8조 ~ 제12조 (현행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u></p>
<p><u>제12조(수당 등) ①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u></p>	<p><u>제13조(수당 등) ① 위원과 특별보좌관에게 -----</u>  <u>-----</u>  <u>-----</u>  <u>-----</u>.</p>
<p><u>② (생략)</u></p> <p><u>제13조 (생략)</u></p>	<p><u>② (현행과 같음)</u></p> <p><u>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u></p>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